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9년 4월 18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4월 11일

나. 제출자 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4. 1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 오금석)

□ 제안이유

2019. 2. 1.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1국(미래경제국)이 신설되면서 미래경제국장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변경 : 14명 → 16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9. 3. 14. ~ 4. 3.) 결과 : 의견 없음
- (2) 사전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정우숙)

가. 개정 취지

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으로 미래경제국이 신설되면서 미래경제국장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[안 제7조]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변경 : 14명 → 16명

-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 위원회 위원 수를 16명 이내 위원 수로 변경

다. 종합 의견

-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, 구 본청 각 국장 및 기금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음
- 2019. 2. 1.자로 실시된 조직개편으로 미래경제국이 신설됨에 따라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미래경제국장이 추가됨에 따라
- 위원회 정원수를 변경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